

資產性所得에 관한 日本의 稅制*

若杉敬明

I. 利子, 配當 등에 관한 課稅

日本의 所得稅制에 있어서는 個人의 所得에 대해서는 所得稅法에 의거한 所得稅가, 法人의 所得에 대해서는 法人稅法에 의거한 法人稅가 賦課된다. 이러한 것은 國稅이며, 그 외에 住民稅, 事業稅 등의 地方稅가 賦課된다.

以下에서는 所得稅를 中心으로 利子, 配當 등의 資產性所得에 대한 課稅의 實狀에 대해서 說明한다.

1. 總合課稅의 原則

所得稅法은 모든 所得을 合算하여 課稅하는 “總合課稅”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同法은 所得을 10種類로 分類하고 있으나 金融資產에서의 所得은 다음의 3種類이다.

- ① 利子所得 : 公社債와 預貯金의 利子, 貸付信託 등의 合同運用信託의 分配金 및 公社債投資信託의 分配金
- ② 配當所得 : 法人에서 받는 利益의 配當, 公社債投資信託 이외의 證券投 資信託의 分配金 등
- ③ 讓渡所得 : 株式의 讓渡差益(capital gain)

2. 利子所得에 대한 課稅

現在 利子所得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特例措置에 의해서 課稅된다. “特例”라고

* 編輯者の註：金融實名制의 보완대책으로 體制改編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현재의 한국실정을 감안할 때, 日本의 稅制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원고는 東京大學 經濟學部의 若杉敬明교수가 본 학회의 창립 10주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하는 것은 總合課稅原則하에서 特別한例外로서 分離課稅가 행하여진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利子所得에 대해서는 個人, 法人 다같이 5%의 住民稅(地方稅)가 分離課稅에 의해 特例徵收된다.

또한 所得稅나 住民稅는 다같이 口座가 있는 金融機關의 店鋪를 통하여 納付된다.

① 源泉分離課稅制度

利子支拂者가 國內에 있는 경우에는 源泉分離課稅制度가 適用되며 稅率 15%(플러스 住民稅率 5%)의 源泉徵收에 의하여 納稅가 完結된다.

단, 割引債의 償還差益의 稅率은 18%로 한다.

② 老人에 대한 少額貯蓄非課稅制度(新마루優)

非課稅範圍는 貯蓄, 公債郵便貯金 각각에 대하여 1인당 元金 350万円, 合計 1,050万円이다.

③ 財形貯蓄課稅制度

勤勞者財產形成住宅貯蓄 및 勤勞者財產形成年金貯蓄에 대해서는 元金合計 550万円까지 非課稅이다.

3. 配當에 대한 課稅

利子所得이 特例로서 分離課稅되어 온데 대하여 株式 등의 配當에 대해서는 總合課稅의 原則이 貫徹되어 年度末의 確定申告에 의해 納付되어 왔다. 그러나 現在는 다음과 같은 特例措置가 있어서 分離課稅도 認定되고 있다.

① 源泉分離選擇制度

1種目 年 50万円 이하의 配當에 대해서는 稅率 35%의 源泉徵收만으로 納稅가 完結되는 制度를 選擇할 수 있다.

② 少額配當申告不要制度

1種目 年 10万円 이하의 配當에 대해서는 確定申告를 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20%의 源泉徵收만으로 納稅가 完結된다. ③ 投資信託의 源泉徵收輕課

證券投資信託의 收益分配에 대해서는 利子와 마찬가지로 稅率 15%(플러스 住民稅 5%)의 源泉分離課稅가 適用되며 源泉徵收로서 納稅가 完結된다.

4.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課稅

租稅特例措置法에 의하여 株式讓渡差益은 分離課稅된다. 公開株式과 非公開株式에 대하여 다소 다르다.

上場株式 및 場外公開株式에 대해서는 다음의 分離課稅 두 方式중 어느 하나를選擇하는 特例가 認定되고 있다.

① 申告分離課稅

年度末의 確定申告때 讓渡益에 대하여 20%(플러스 住民稅 6%)가 分離課稅된다.

② 源泉分離課稅 株式의 讓渡金의 5%(轉換社債 등은 2.5%)를 讓渡所得으로 간주하여, 이것에 20%의 稅率에 의하여 分離課稅한다. 源泉徵收는 證券會社에 의해서 행해지며 納稅된다.

非公開株式 등에 대해서는 申告分離課稅만이 認定되고 있다. 讓渡差益은 과거부터原則的으로 非課稅이며 去來回數가 대단히 많은 特定의 경우에만 申告納稅가 되고 있다.

5. 法人에 대한 稅制

利子所得, 配當所得 및 讓渡所得의 모두가 法人所得에 加算되어 法人稅가 賦課된다. 그러나 法人の 경우에도 이러한 所得에 대해서는 源泉徵收稅가 賦課된다. 그러므로 源泉徵收稅額은 法人稅額에서 控除된다.

더구나 配當所得에 대해서는 二重課稅回避의 目的 및 配當控除의 名目으로 稅額控除가 認定되고 있다.

6. 金融實名制

日本의 金融시스템은 法律的으로는 實名制가 아니다. 단, 行政指導 및 業界의 自主規律로서 架空名義口座의 防止에 努力하고 있다. 즉, 銀行이나 證券會社에서 口座를 開設할 때는 自動車免許證, 健康保險證 등에 의하여 本人確認을 요청받고 있다. 단, 割引國債 및 日本興業銀行을 비롯하여 몇몇 金融機關이 發行하는 割引金融債에 대해서는 1店鋪當 3,000万円까지는 無記名이다.

1980년대 後半 돈세탁問題를 契機로 本人確認은 더욱 嚴格하게 實施되고 있다.

II. 現在의 稅制에 이르기까지의 經緯(綠色카드制의 挫折)

1. 貯蓄激勵政策과 少額貯蓄非課稅制度

1950년대 後半 日本은 明確히 高度經濟成長을 指向하고(所得倍增計劃), 資本蓄積促進稅制를 展開하였다. 거기에서 基本的인 原則은 ① 利子所得의 源泉分離課稅 ② 配當所得의 總合課稅였다. 단, 配當所得에 대해서는 利子所得과의 均衡을 위하여 利子所得과 같은 源泉徵收가 並行하여 實施되었다.

그 외에 더욱 貯蓄獎勵를 위하여 1963年에는 少額貯蓄非課稅制度(마루優)가 創設되어 1980年代 中半까지 繼續되었다.

利子 및 配當課稅의 주요 變更

年度	利子所得	配當所得
1955년	非課稅	源泉徵收稅率 10%
1957년	長期所得 非課稅 短期所得 源泉徵收稅率 10%	
1959년	一律課稅 10%	
1963년	源泉徵收稅率變更 5% 少額貯蓄非課稅制度(마루優)創設 →마루優限度額 50만円	源泉徵收稅率 5%
1965년	源泉徵收稅率引上 10%	源泉分離課稅選擇制 →稅率 15%
	마루優限度額引上 100만円	少額配當申告不要制度
1967년	源泉徵收稅率引上 15%	分離課稅率引上 20%
1971년	總合課稅化 源泉分離選擇(定期) 20%	
1972년	마루優限度額引上 150만円	
1974년	마루優限度額引上 300만円	少額配當非課稅制度
1977년	源泉徵收稅率引上 20%	源泉分離課稅率引上 →稅率 30%
1987년	一律源泉分離에의 轉換 15%	
	新마루優의 導入	

2. 證券恐慌과 配當所得課稅의 變化

1960년대 前半의 好況(岩戸景氣)으로 株式市場은 봄을 맞이 했으나 1964年 金融緊縮과 더불어 急激히 景氣가 惡化되어 株價는 暴落했다. 그 結果 1965年 證券恐慌이 發生하여 大證券會社까지 倒產의 危險에 빠졌다. 그 때 株式投資를 奬勵하기 위하여 總合課稅原則下에서의 例外措置로서 源泉分離選擇制가 導入되었다.

3. 綠色카드制의 經緯

(1) 少額貯蓄非課稅制度의 擴充

더욱 貯蓄獎勵를 하기 위하여 1963年부터 시작한 少額貯蓄非課稅(마루優)制度는 當初限度額 50万円 1種類, 1店鋪에 限定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5年에는 限度額이 100万円으로 引上됨과 동시에 多種類, 多店鋪가 認定되게 되었다. 1967年에는 少額國債利子의 非課稅制度(限度50万円)도 시작되었다.

1971년 利子所得을 源泉分離課稅에서 總合課稅로 變更한다고 하는 大轉換이 있었다. 그러나 少額貯蓄을 期待하기 위하여 定期性預金 등에 대해서는 源泉選擇(源泉徵收稅率 20%, 그후 1973年 25%, 1978年 35%로 變更), 要求準備金 등에 대해서는 申告不必要(源泉徵收稅率 15%, 1973년 20%)가 認定되는 동시에 마루優限度額이 150万円(少額國債 100万円, 新設 勤勞者財產形成貯蓄(財形貯蓄) 100万円)으로 引上되었다. 다시 1974년의 稅法改正에 의하여 마루優限度額은 少額貯蓄, 少額國債, 財形貯蓄과 더불어 300万円으로 引上되었다. 더구나 郵便預金은 一貫하여 非課稅였으나 預入限度額이 設定되었다. 이 限度額은 마루優限度額과 함께 引上되었다.

(2) 마루優의 濫用과 綠色카드制度

마루優를 利用할 때에는 稅務署에 申告書를 提出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稅務署가 處理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申告書는 銀行 등에 보관해 두었다. 더구나 多種類, 多店鋪 利用이 許可되었으므로 실명을 포착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 그 結果 1970年代 중반이 되면 마루優는 濫用되어 脫稅의 소굴화되어 政府의 課稅權은 심하게 침식되고 있었다.

한편, 1960年代의 經濟成長下에서는 稅收는 순조롭게 增加했으므로 政府는 빈번히 減稅를 단행했다. 1973년의 石油危機로 法人利益이 急增했기 때문에 稅收가 好調되어, 1974年에도 所得稅를 중심으로 大幅減稅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不况때문에

그 후의 稅收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게 되었고, 그 위에 景氣부양책(自救策)의 公共投資를 위한 赤字國債(第2次大戰後 처음)을 發行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었으므로 이것이 最後의 減稅가 되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높고 名目所得이 增加하여 實質所得稅率은 上昇되었다. 그 결과 重稅感에 대한 國民의 불만은 높아만 갔다. 더구나 金利는 急上昇하고 마루 優는 얼마든지 利用되었다. 당연히 國民은 多額의 金融資產을 가진 富裕層쪽이 稅負擔이 가볍다고 하는 불만을 가지게 되어, 不公平稅制를 다시 개선해 보자는 機運이 높았다.

이와 같은 事態下에서 決定된 것이 綠色카드制였다. 이것은 少額貯蓄 등 利用者 카드라고 하는 綠色카드로 마루優의 適用을 받을 때에 提示를 要求하며, 그 濫用을 防止함과 더불어 이것에 의하여 實名을 모으고 1971年에 導入된 利子所得의 總合課稅를 實現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었다.

(3) 綠色카드제의 制定과 廢止

綠色카드制는 다른 事項과 더불어 1980年的 改正稅法에 담겨졌으나 國會에서는 與·野黨 어느 쪽에서도 反對다운 反對는 없었으며 改正案은 一括成立되었다.

이 稅法改正은 當初부터 全國民에 일제히 適用하기 위하여 3年이라는 充分한 準備期間을 두고 마루優制度의 適用을 받는 자가 綠色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1984年 1월 以後로 豫定되고 있었다.

그러나 實施가 가까워짐에 따라 民社黨을 필두로 與·野黨에서 反對論이 강하게 일어나 1983年 3月 政府는 施行을 3年間 延期할 것을 決定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마침내 1985年的 稅法改正에서 廢止로 몰리고 말았다. 前代未聞의 事態였다.

反對論者는 다음과 같은 論據를 展開했으나 實際로는 自營業者の 利益을 원호한다고 하는 目的이 明白하며, 本質적으로는 极히 政治的인 決定이었다.

- ① 預貯金 등의 手續이 번잡하게 된다.
- ② 預貯金 등의 源泉이 된 所得의 源泉을 追求당할 우려가 있다.
- ③ 이것을 통하여 從來의 安定의 經濟成長을 沮害할 우려가 있다.
- ④ 利子所得의 總合課稅 그 自體가 租稅理論上 적절한가 어떤가가 문제이다.(課稅後의 所得의 剩餘인 貯蓄의 利子에 課稅하는 것은 二重課稅의 우려가 있었다.)
- ⑤ 郵便預金은 制度의으로 非課稅이며 綠色카드制는 適用되지 않으므로 民間金融機關이 不公平하다.

(4) 綠色카드制의 問題點

綠色카드制는 利子所得에만 適用되는 것이며, 完全한 總合課稅라고 하는 觀點에서는 극히 애매한 것이었다. 그 점에서 現在 檢討中인 後術하는 納稅者番號制度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當時의 日本의 土壤에서는 包括的인 納稅者番號制의 導入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判斷에서 金融去來上에 適用을 限定해서 一種의 實名制의 導入을 도모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全國的인 實明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긴 準備期間을 두었던 것이 逆으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고 反對論을 펴게 하고 말았던 것이다.

4. 綠色카드制의 教訓과 現在의 稅制

綠色카드制의 決定에서 廢止까지의 經緯에서 日本國民의 稅에 대한 認識이나 感情이 明白히 되었다. 그 失敗에 대한 反省에서 發生한 것이 1987年的 稅法改正에 의해서 1988年 4月에서 現在까지 실시되고 있는 신마루優制度와 新設의 利子所得의 一律的 源泉分離課稅制라고 하겠다.

現在의 稅制는 綠色카드制의 教訓과 1980年代 後半의 株式붐을 反映한 것이다. 株價의 騰貴하에서 資產性所得에 대한 優待措置가 廢止됨과 동시에 讓渡益稅가 創設되었다.

먼저 1987年的 稅制改正에 의하여

- ① 利子所得의 一律的 源泉分離課稅
- ② 少額貯蓄非課稅制度의 老人에의 限定
- ③ 譲渡差益課稅의 範圍擴大가 이루어 졌다. 계속해서 1988年에는
- ④ 譲渡差益의 原則課稅
- ⑤ 有價證券去來稅의 引下
- ⑥ 配當輕課의 廢止

가 實施되어 今日에 이르고 있다. ①도 큰 變化이나 ④의 譲渡差益(capital gain)課稅도 30年 以上 계속된 非課稅의 原則을 轉換시키는 큰 變化이다.

III. 現在의 資產性所得課稅의 問題點과 納稅者番號制度

1. 源泉分離課稅의 稅率

上述한 바와 같은 利子所得은 源泉分離課稅에 의하여 一律源泉徵收되므로 架空名義口座이든 他人名義口座이든 적어도 脫稅의 問題는 없다. 配當所得에 대해서도 源泉分離課稅를 選擇하든 總合課稅를 選擇하든 一定率의 源泉徵收가 행해지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20%라고 하는 源泉徵收稅率은 富裕層에는 지나치게 低率이라고 하는 불만이 강하다. 實名制가 實施되어 있지 않고 실명리스트를 알 수 없는 現在預貯金額에 의해서 稅率隔差를 두더라도 의미가 없다. 底所得者層의 경우를 생각하면 20%를 변경하는 것은 困難할 것이다.

2. 所得捕捉率에 관한 不公平感

특히 日本에서는 이른바 備給生活者와 같이 所得稅가 源泉徵收되는 者와 農家나 自營業者(醫師, 辯護士, 作家, 運動選手 등)와 같이 確定申告에 의하여 納稅하는 者와는 所得의 捕捉率에 큰 差異가 있다고 하며 紿與生活者는 불만이 크다. 이와 같은 自營業者는 당연히 큰 金融資產을 가지고 있지만 그 稅率이 너무 낮기 때문에 不公平感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 日本에서는 捕捉率격차를 나타내는 “토－고－산”이라는 둘림말이 있다. 그것은 10(열)－5(다섯)－3(셋)이라는 의미이며 課稅上 備給者의 所得은 100%(10割)捕捉되는데 대하여 申告納稅의 自營業者의 所得은 50%(5割), 農業者의 所得은 30%(3割)밖에捕捉되지 않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3. 無記名割引債의 惡用

최근 建設業界에서의 스캔들로 巨物政治家, 懸知事, 市長 등이 수뢰의 罪로 차례로 逮捕되었으나 뇌물을 은닉하기 위하여 割引債가 利用되고 있었다. 割引債는 1種類 3000万円까지 無記名이므로 源泉을 밝힐 수 없는 資金의 貯藏所로서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3000万円이라고 하는 限度는 있으나 그것은 1種類에 限하는 것이며 割引債의 種類는 많으므로 巨額의 資金을 은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 割引國債의 發行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割引債의 源泉分離課稅率은 18%로 優待되고 있다. 어떻든 稅負擔의 不公平에 대한 國民의 不滿은 높아 있으며 拔本的인 稅制改正이 行政府에서 檢討되고 있다.

4. 納稅者番號制度導入의 움직임

綠色카드制는 결국 废止되었으나 보다 本格的인 實名制度가 納稅者番號制라고 하는 이름하에 政府의 稅制調査會에서 檢討가 繼續되고 있다. 1995年부터 社會保險의 國民番號制가 實施됨으로 納稅者番號制와 並行해서 實시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議論의 過程에서는 納稅者番號制度는 個人프라이버시를 너무 侵害한다고 하여 反對의 소리가 강하다. 歐美的 納稅者番號制度를 보면 行政番號制(필요한 경우에 番號를 附與), 社會番號制(出生과 더불어 自動的으로 부여)로 大別된다. 稅制調査會의 報告는 番號의 完全制라고 하는 점에서는 社會番號制의 쪽이 優越하다. 上述한 個人프라이버시의 侵害라고 하는 觀點에서의 國民의 抵抗感은 약하므로 行政番號의 쪽이 받아들이기 쉽다고 한다. 더구나 社會保險에서는 社會番號制가 취해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어느 것이든 이 制度는 廣範圍하게 使用하는 것이 可能하다. 金融, 不動產, 貴金屬 등의 去來에 있어서는 그 形態에 따라 必要한 種類에 納稅者番號를 記入할 것을 要求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물론 他人의 番號를 惡意로 사용했을 경우의 罰則 등은 必要하다.

納稅者番號制度는 그 使用方法에 의하여 모든 稅에 관해서 徵稅漏落을 豫防하는 有力한 수단이 될 수 있다. 資產의 去來 뿐만 아니라 企業活動의 일상의 去來에도 使用하면 購入 販賣가 아주 明瞭하고 정연해지므로 事業者에 의한 消費稅의 橫領問題도 解決된다. 그만큼 일부의 自營業者 등에서의 反對가 더욱 豫想되나 課稅負擔의 不公平感은 크게 解消될 것이다. 日本에서는 지금부터 納稅者番號論議가 고조되어 갈 것이라 사료된다.

* 簡易課稅制度에 의하여 年間 賣出額 4億円 이하의 業者は 賣出額에서 見積買入額(賣出額에 “見積買入率”(90–60%)을 곱한 金額)을 控除한 殘金을 附加價值라 간주하고 그 중에서 3%를 納稅하면 되게 되어 있다. 또한, 年間賣出額 3,000만円 이하의 業者は 消費稅納入이 免除된다. 小規模의 業者が 消費稅를 횡령하고 있다고 批判이 많은 制度이다.